국민권익위원회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(행정심판안건검토)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-92호, 제2026-101호 관련,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1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최종합격자

채용분야	응시번호(성명)
행정심판 안건검토	심판603(문○○)

※ 최종합격자에게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별도 안내할 예정

2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

□ **등록 기간 :** 2026. 10. 21.(수) ~ 2026. 10. 28.(수)

□ **등록 방법 :** 최종합격자 서류 우편 제출

○ (우편번호 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공무원채용담당)

※ 등록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등기우편(원본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① 기본증명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 1부

※ 종류 : "상세"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되도록 발급

②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 1부

※ 종류 : "상세"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되도록 발급
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<서식>

④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
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)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

※ 인화 현상된 사진파일 1장 필요(검사서 양식은 병·의원마다 다를 수 있음)
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개정('26.6.16.)으로 마약류 6종 검사가 도입되었는바, 검진 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사전 확인 후 방문 필요

⑤ 증명사진 1매 (여권사진 규격)

※ 사진 파일도 담당자 **메일(qorthakd7@korea.kr)**로 별도 제출

□ 유의사항

○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
○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부적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**문의처 :**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1)

서식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민권익위원회, 경찰청(소속기관 포함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등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조회
2	범죄경력 유무조회
3	병적조회
4	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■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